

등록번호	해외사업처-738
등록일자	2017.08.16.
결재일자	2017.08.16.
공개구분	비공개
방침번호	사장-245

부장	처장	실장	사장
김남욱	김종범	김석호	08/16 김태호
일상감사 경유 NO (113) / 2017-08-16 / 경영감사처 / 정희윤			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2017.8.31 (제2017-2회)

의
결
사
항

해외사업 추진관련 대리인 임명

제 안 자	해외사업처장 김종범
제안년월일	2017. 8. 31

의
결
사
항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2017. 8. 31 (제2017-2회)

해외사업 추진관련 대리인 임명

제 안 자	해외사업처장 김종범
제안년월일	2017. 8. 31.

해외사업 추진관련 대리인 임명(안)

1. 의결주문

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및 각종 계약관련 대리인 임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공사 정관 제 25조 (대리인의 임명)에 의거 사장을 대리하여 해외사업 입찰 및 계약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하고자 함.
 - 해외사업 입찰 참여에 있어 공사의 정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바 각 해외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 - 해외사업의 경우 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괄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므로서 해외사업 입찰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대리인의 권한
 - 발주처 면담 및 계약관련 협상
 - 컨소시엄사간 역할 및 책임 협의 및 협약서 서명
 - 입찰제출서류 검토 및 서명
 - ▶ 입찰서류 : 기술제안서, 가격제안서, 컨소시엄 협약서, 보안협약서 등
 -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관련
- 위임기간 : 관련 해외사업의 입찰 및 계약관련 절차 종료시까지

4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 :

-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5조(대리인의 임명)

【제25조(대리인의 임명)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】
-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(의결사항) 20호

나. 통합공사 정관 개정 이전 정관 :

- 서울도시철도공사 정관 제23조(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)

【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·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(개정 2003.6.26.)】
- 서울메트로 정관 제21조(대리인의 선임)

【사장은 상임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서울메트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】
- 정관 개정 이전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.

다. 절 차 : 이사회 의결 → 시행. 끝.